#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52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3.

발 의 자: 김주영・박홍배・박지원

박해철 • 박희승 • 정태호

박균택 • 한정애 • 오세희

윤건영 · 강준현 · 김남근

의원(12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.

이에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수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,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인력 파견과 기술·장비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.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여 원

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#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제1항 전단 중 "협력"을 "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밖의 협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위하여"를 "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"로, "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"을 "설명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기술·장비 등을"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한 자에게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있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혅 행 제19조의3(기상현상으로 인한 재 제19조의3(기상현상으로 인한 재 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)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 등) ① -----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 달 · 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나 그 밖의 협력-----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.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 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----위하여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 --- 설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명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기 술·장비 등을 ----. 이 경우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제

	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한
	자에게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
	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
	<u>수 있다.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